

[신규대비표- 본권]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안)

25년 매뉴얼				26년도 개정(안)				개정 사유
※ 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의 시행일(2025.3월 기준)				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의 시행일(2026.3월 기준)				법령 개정
구분	시행일	제·개정일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구분	시행일	제·개정일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5. 2. 28	2024. 2. 27., 일부개정	법률 제2035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6. 9. 11.	2026. 3. 10., 일부개정	법률 제2142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4. 12. 31.	2024. 12.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6. 6. 11.	2026. 3. 10.,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6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2024. 2. 6.	2024. 2. 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2026. 3. 25.	2026. 3. 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5. 3. 6.	2025. 3. 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6. 3. 11.	2026. 3. 1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3호	
<목차> ◆ 《별권1》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목차> ◆ 《별권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일부 삭제>				제목 변경

<p>p.13 <표 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등을 명시한 법률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188 381 982 544"> <thead> <tr> <th>법률명</th> <th>소관(가나다 순)</th> </tr> </thead> <tbody> <tr> <td>「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td> <td>환경부</td> </tr> <tr> <td>「산업기술혁신 촉진법」</td> <td>산업통상자원부</td> </tr> </tbody> </table>	법률명	소관(가나다 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p>p.13 <표 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등을 명시한 법률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1021 381 1816 544"> <thead> <tr> <th>법률명</th> <th>소관(가나다 순)</th> </tr> </thead> <tbody> <tr> <td>「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td> <td>기후에너지환경부</td> </tr> <tr> <td>「산업기술혁신 촉진법」</td> <td>산업통상부</td> </tr> </tbody> </table>	법률명	소관(가나다 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부	<p>정부조직법 개정(25.10.1.) 사항 반영</p>
법률명	소관(가나다 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법률명	소관(가나다 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부													
<p>p.16 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의견수렴 및 개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R&D 신문고 → 연구현장 의견제안</p>	<p>p.16 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의견수렴 및 개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참여소통 → R&D 신문고 → 연구현장 의견제안</p>	<p>IRIS 홈페이지에서 실제 접근경로로 수정</p>												
<p>p.18 제2절 주요 용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연구개발혁신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말한다. <생략> 10. <신설></p> </div>	<p>p.18 제2절 주요 용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연구개발혁신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말한다. <생략> 10. “정부납부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p> </div>	<p>혁신법 개정(26.3.10.) 사항 반영</p>												

<p>p.20 가. 국가연구개발사업</p> <p>(참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p> <p>6. 연구개발(R&D)사업</p> <p>1. 적용대상</p> <p>□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자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신규사업의 연구개발사업 포함여부는 <별첨1> OECD 권고기준 및 <별첨2>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되,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조정 	<p>p.20 가. 국가연구개발사업</p> <p>(참고)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p> <p>6. 연구개발(R&D)사업</p> <p>1. 적용대상</p> <p>□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자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신규사업의 연구개발사업 포함여부는 <별첨1> OECD 권고기준 및 <별첨2>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되,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기획예산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조정 	<p>정부조직법 개정(25.10.1.) 사항 반영</p>
--	---	---

p.29

카. Q&A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구성 관련

<신설>

p.29

카. Q&A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구성 관련

Q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 연구소가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 시 명시한 사업에 한하여 협약은 본원이 체결하되 부설연 연구자는 외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연구소 각각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지정해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자 현황’ 작성 시 담당역할 ‘총괄’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예시)>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학생 연구자 학위 및 전공 (학생 연구자인 경우만 기재)			담당역할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현 학위과정	전공	입학 년도	
김ㅇㅇ	대한민국	A 연구원	연구 책임자	11111111	박사	화학	2000				총괄
이ㅇㅇ	대한민국	A 부설연구소	참여 연구자	22222222	박사	화학	2000				총괄

출연연

본원-부설기관 간

공동연구 가능

가이드라인 제시

<p><신설></p>	<p>p.30</p> <p>Q17. 수요기업과 수혜기관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업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또는 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협약 당사자)으로 참여하여 연구 수행이 가능함. 다만 수요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함 - 수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없으며 사업공모 시 별도로 안내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협약 당사자가 아님)으로 참여 가능. 또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기관(기업)의 필요에 따라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을 부담할 수 있음 <p>※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1쪽~2쪽 참고</p>	<p>의미 명확화</p>
<p>p.33 제3절 적용범위 가. 개요 실무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 편성 시 '연구개발사업(R&D)'으로 분류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요R&D) 또는 기획재정부(일반R&D) 심의를 받는 세부사업을 의미함</p>	<p>p.33 제3절 적용범위 가. 개요 실무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 편성 시 '연구개발사업(R&D)'으로 분류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요R&D) 또는 기획예산처(일반R&D) 심의를 받는 세부사업을 의미함</p>	<p>정부조직법 개정(25.10.1.) 사항 반영</p>

<p>p.35 제3절 적용범위 나. 혁신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제3조) ③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제3호)</p>	<p>p.34 제3절 적용범위 나. 혁신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제3조) ③ 제21조 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제3호)</p>	<p>혁신법 개정(26.2.19.) 사항 반영</p>
<p>p.36 제3절 적용범위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연구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으로 편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우선 적용 * 320-01목(민간경상보조), 320-07목(민간자본보조), 330-01목(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목(자치단체 자본보조) - 혁신법 제13조에 근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이 아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 및 통합EZbaro)을 우선 사용하되, 그 집행내역 및 결과 등을 반드시 보조금 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상호관리 필요(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85) 	<p>p.36 제3절 적용범위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연구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으로 편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우선 적용 * 320-01목(민간경상보조), 320-07목(민간자본보조), 330-01목(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목(자치단체 자본보조) - 혁신법 제13조에 근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이 아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 및 통합EZbaro)을 우선 사용하되, 그 집행내역 및 결과 등을 반드시 보조금 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상호관리 필요(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85) 	<p>2026년 사항 반영</p>

p.52

마. 공모 및 공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함

①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

- 목적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혁신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
- 3책 5공 적용제외 여부(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2조)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 계상 불가 과제 여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1조에 따른 계상 불가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 <신설>

p.53~54

마. 공모 및 공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함

①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

- 목적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혁신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
- 3책 5공 적용제외 여부(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2조)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 계상 불가 과제 여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1조에 따른 계상 불가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연구소의 동일 연구개발과제 참여 허용 여부 및 적용 요건

출연연

본원-부설기관 간
공동연구 가능
가이드라인 제시

<p>p.54</p> <p style="text-align: center;"><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p> <p>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p style="color: red;"><신설></p>	<p>p.56</p> <p style="text-align: center;"><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p> <p>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3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p>25.3.25.개정사항 반영</p>
<p>p.57</p> <p>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p> <p style="text-align: center;"><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 기준 ></p> <p>2. 평가위원 제외대상 및 제척기준(혁신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4항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제척대상 위주로 적용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과제의 내용, 전문인력 구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 제척기준 적용을 최소화한다. -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에 대해서는 대학, 출연연, 과기출연연, 특정연의 최하위단위 부서(학과, 학부 등)까지 한정하여 제외 적용한다. 	<p>p.59</p> <p>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p> <p style="text-align: center;"><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 기준 ></p> <p>2. 평가위원 제외대상 및 제척기준(혁신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4항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제척대상 위주로 적용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과제의 내용, 전문인력 구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 제척기준 적용을 최소화한다. -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까지 한정하여 제외 적용한다. 	<p>혁신법 시행령 24.12.31.개정사항 반영</p>

<p>p.58 <표 2-2>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및 불리한 대우 항목(예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우대</td> <td>1. ~ 11. (생략) 12.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신설></td> </tr> </tbody> </table>	구분	기 준	우대	1. ~ 11. (생략) 12.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신설>	<p>p.60 <표 2-2>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및 불리한 대우 항목(예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우대</td> <td>1. ~ 11. (생략) 12.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13. 최근 3년 이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확인 받은 기술육성주체가 참여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14. 지역 소재 대학 및 기업 등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	기 준	우대	1. ~ 11. (생략) 12.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13. 최근 3년 이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확인 받은 기술육성주체가 참여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14. 지역 소재 대학 및 기업 등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p>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사항 반영(전문기관 개정 수요)</p>
구분	기 준									
우대	1. ~ 11. (생략) 12.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신설>									
구분	기 준									
우대	1. ~ 11. (생략) 12.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13. 최근 3년 이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확인 받은 기술육성주체가 참여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14. 지역 소재 대학 및 기업 등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p>p.58 바. 신청과제의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평가를 함에 있어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과제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함 <신설> 	<p>p.61 바. 신청과제의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평가를 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과제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함 * 창의성 평가 시 합리적인 분석을 토대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연구과제로 판단되면 해당 항목 가산점 부여 가능 	<p>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사항 반영(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과제평가 추진사항)</p>								
<p>p.5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를 서면평가, 대면평가(발표, 토론 등), 온라인평가, 현장평가 및 이를 혼합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p>p.6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를 서면평가, 대면평가(발표, 토론 등), 온라인평가, 현장평가, 심층(합숙) 평가 및 이를 혼합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p>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사항 반영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과제평가 추진사항)</p>								

p.61

1.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 설>

1.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p.63

1.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연구개발비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협약 시
- 연구개발비
- 지급시기를
- 정하도록 하고
- 해당 일정을
- 준수하여
- 연구개발비를
- 지급하도록 하는
- 근거 마련

<p>p.62</p> <p>나. 협약 체결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의 당사자)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이 부처·전문 기관과의 협약 당사자이며, 연구자는 협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인 경우에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사업단의 경우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장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협약체결 불가) <p><신설></p>	<p>p.64</p> <p>나. 협약 체결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의 당사자)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이 부처·전문 기관과의 협약 당사자이며, 연구자는 협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인 경우에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사업단의 경우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장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 시 명시한 사업에 한하여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협약은 법인격을 가진 본원이 체결하되, 부설연 연구자는 외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하나의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음 	<p>출연연 본원-부설기관 간 공동연구 가능 가이드라인 제시</p>
<p>p.65</p> <p>마. 표준 협약 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시에는 연구개발계획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에 협약에 포함되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right;">(이하 생략)</p> </div>	<p>p.67</p> <p>마. 표준 협약 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시에는 연구개발계획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에 협약에 포함되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연구개발비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right;">(이하 생략)</p> </div>	<p>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시 연구개발비 지급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해당 일정을 준수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p.65

마. 표준 협약 서식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시에는 연구개발계획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함

그 밖에 협약에 포함되는 사항

(이상 생략)

-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에 있음 또는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에 관한 사항
 - * 협약 시 혁신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함
-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신고 사항
- 특수관계자(친족 또는 미성년자)의 연구개발 참여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4촌 이내 친족 또는 미성년자)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저자 자격을 부여할 경우, 소속 연구개발기관장에게 보고, 연구개발기관장의 검토·승인(1차 검증) 및 전문기관장의 승인(2차 검증) 필요

p.67

마. 표준 협약 서식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시에는 연구개발계획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함

그 밖에 협약에 포함되는 사항

(이상 생략)

-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에 있음 또는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에 관한 사항
 - * 협약 시 혁신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함
-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신고 사항
- 특수관계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특수관계자(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 미성년자)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
 -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특수관계자등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참여의 필요성(활용 필수성, 대체 불가능성 등), 연구수행 능력(연구실적, 연구참여경력 등) 및 저자 자격의 적합성(전공, 학위 등) 등을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사전 검토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의견 제시
 -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문기관의 장의 의견에 따라 특수관계자등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및 연구개발성과의 저자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

혁신법 시행규칙 개정(26.3.25.)

사항 반영

- 특수관계자 등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검토 등

p.71

<표 2-5> 통합정보시스템상 협약변경의 상호협의/승인/통보사항 세부기준

구분	세부 항목	승인/통보	관련 법령
생략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변경	①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예산의 변경	승인 (평가 시 활용)
	연구개발비 계좌	① 연구개발비 지급계좌 변경	통보 영 제14조 제2항 제4호
<신설>			
이하 생략			

p.73

<표 2-5> 통합정보시스템상 협약변경의 상호협의/승인/통보사항 세부기준

구분	세부 항목	승인/통보	관련 법령	
생략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변경	①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예산의 변경	승인 (평가 시 활용)	
	연구개발비 계좌	① 연구개발비 지급계좌 변경	통보 영 제14조 제2항 제4호	
	연구개발비 지급시기	①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의 변경 ※ 상호협의 후 '부차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방식'으로 협약 변경	통보	영 제14조 제2항 제5호
	기관부담금 (현금) 납부시기	① 기관부담금 중 현금 납부시기의 변경 ※ 부차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상호 협의 후 변경	통보	영 제14조 제2항 제5호
	이자사용	① 정부지원비 이자의 사용 ※ 국고납입 하지 않고 연구비 산입 또는 R&D재투자 등 사용 시	승인	영 제20조 제3항
이하 생략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협약 시 연구개발비 지급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해당 일정을 준수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연구비 지급시기 협약변경 통보사항으로 반영

p.82
아. Q&A
<신설>

p.83
아. Q&A

Q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연구소가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 (역할 및 책임)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원과 부설연구소 간 연구수행 범위, 총괄역할 수행 연구자 지정, 성과관리 및 제재처분 등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
- (연구개발비) 연구비 지급, 집행 및 정산은 본원과 부설연구소 각각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함
- (성과 및 기술료)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기술료 배분 및 관리 기준은 내부 규정에 두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본원-부설연간 부속계약에 따라 정해야 함
- (제재) 제재 사유 발생 시 본원과 부설연구소 간 내부 책임 부담 기준은 내부 규정에 두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본원-부설연간 부속계약에 따라 정해야 함
- 해당 내용에 대해 협약서에 직접 명시하거나, 내부 규정 또는 부속계약서를 통해 구체화하여 협약체결 시 반영해야 함
- 단, 본 기준은 범부처통합연구자원시스템(IRIS) 관련 기능개선 이후 적용 가능함

출연연
본원-부설기관 간
공동연구 가능
가이드라인 제시

p.84

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

<표 2-6> 연구 수행과정 평가지표 예시

평가지표(예시)	세부 지표(예시)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방법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성격상 반복수행이 가능한 연구의 경우 연구목표 도출 실패 후 1회 이상 재시도했는지 여부 - 연구 기자재 활용의 적절성 • 수행과정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노트 등 기술개발과정에 대한 자료 및 각종 데이터가 체계적이고 충실한지 여부 - 연구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초기·수정모델, 실험데이터 등 유·무형적발생물의 존재 여부 - 연구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 연구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는지, 참여업의 변경, 부도 등으로 인하여 연구 진행에 곤란 등의 존재 여부 - 연구환경 구축의 적절성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물의 기술성 및 사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목표한 A라는 결과물 도출에는 실패하였으나, 연구 과정에서 파생된 B라는 결과물의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 * 3M사의 포스트잇, 머크사의 발모제 프로페시아, 화이자사의 비아그라 유사 사례의 경우 등 • 연구대상 및 방법의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연구사례가 없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대상에 도전 - 전혀 답습이 아닌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방법을 통해 연구가 수행되어 학술적·사회적으로 공헌 • 후속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연구 과정에서 기존의 장애 요인 해소 등을 통해 목표달성 가능성을 높인 경우 - 당초 목표한 결과물 도출에는 실패하였으나, 결과도출을 위해서 시도했던 접근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

p.87

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

<표 2-6> 연구 수행과정 평가지표 예시

평가지표(예시)	세부 지표(예시)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방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연구목표 미달성 시 달성을 위한 재시도 여부) • 수행과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노트 작성·관리 자체규정 지침 수립 여부 및 작성의 충실성 - 각종 데이터 구축 및 운영의 체계성·충실성 - 로드맵 수행의 적절성(계획 대비 일정, 연구비 집행, 시설·장비 활용, 인력참여, 역할분담 등) - 과제 수행의 위험요인 및 연구환경 변화에 관한 관리 여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물의 기술성 및 사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과정에서 파생된 성과물의 기술성 및 사업성의 우수성(목표 미달성 경우에도 해당) • 연구대상 및 방법의 도전성·혁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표의 도전성 - 새로운 분야·대상에의 도전성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사항

반영(기존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반영)

<p>p.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수행과정과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 표준지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 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해야 함(혁신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p><신설></p>	<p>p.8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수행과정과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 표준지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 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해야 함(혁신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p>※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하여 연구과제의 평가등급은 완료/미완료로 개편 예정(26년 이후)</p>	<p>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사항 반영(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과제평가 추진사항)</p>																																																
<p>p.85</p>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결과 통보 범위</p> <p>· 통보 정보의 범위</p> <table border="1" data-bbox="183 771 987 1088"> <thead> <tr> <th></th> <th>선정 여부</th> <th>중단·계속 여부</th> <th>점수·등급</th> <th>평가위원 명단</th> <th>종합의견</th> </tr> </thead> <tbody> <tr> <td>선정 평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단계 평가</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최종 평가</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p>※ 평가위원 명단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필요 <신설></p> <p>※ 참고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4.4), Ⅲ. 주요내용, 1. 공통사항</p>		선정 여부	중단·계속 여부	점수·등급	평가위원 명단	종합의견	선정 평가	○			○	○	단계 평가		○	○	○	○	최종 평가			○	○	○	<p>p.88</p>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결과 통보 범위</p> <p>· 통보 정보의 범위</p> <table border="1" data-bbox="1010 771 1813 1088"> <thead> <tr> <th></th> <th>선정 여부</th> <th>중단·계속 여부</th> <th>점수·등급</th> <th>평가위원 명단</th> <th>평가위원별 의견*</th> </tr> </thead> <tbody> <tr> <td>선정 평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단계 평가</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최종 평가</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p>※ 평가위원 명단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필요 * 익명화된 평가위원별 의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소수 분야로 평가위원이 특정되는 경우, 합의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종합의견으로 대체 가능</p> <p>※ 참고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5.12), Ⅲ. 주요내용, 1. 과제평가 세부기준</p>		선정 여부	중단·계속 여부	점수·등급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의견*	선정 평가	○			○	○	단계 평가		○	○	○	○	최종 평가			○	○	○	<p>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사항 반영(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과제평가 추진사항)</p>
	선정 여부	중단·계속 여부	점수·등급	평가위원 명단	종합의견																																													
선정 평가	○			○	○																																													
단계 평가		○	○	○	○																																													
최종 평가			○	○	○																																													
	선정 여부	중단·계속 여부	점수·등급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의견*																																													
선정 평가	○			○	○																																													
단계 평가		○	○	○	○																																													
최종 평가			○	○	○																																													

p.86

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 (단계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 등을 결정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보완·변경·중단, 지원 연구 개발비 증·감액이 가능(혁신법 제12조 제3항)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할 경우 중단 가능(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 단계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쟁방식 추진 등)에 따라 공고된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단 가능(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 <신설>
- 단계평가 결과 유사 연구성과가 개발되었거나 연구환경이 변화되어 연구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중단이나 연구개발목표, 연구책임자 등 변경 조치 가능

p.89

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 (단계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 등을 결정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보완·변경·중단, 지원 연구개발비 증·감액이 가능(혁신법 제12조 제3항)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할 경우 중단 가능(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 단계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쟁방식 추진 등)에 따라 공고된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단 가능(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할 경우, 참여제한 또는 재재부가금 부과 가능(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단계평가 결과 유사 연구성과가 개발되었거나 연구환경이 변화되어 연구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중단이나 연구개발목표, 연구책임자 등 변경 조치 가능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사항
반영(기존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반영)

<p>p.8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평가)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 등 후속 조치를 과제 공고 혹은 추진 초기에 명문화하여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 가능 (혁신법 제12조 제3항) ※ 후속 조치의 상세 내용은 부처·전문기관에서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설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한 과제의 경우,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신설> 	<p>p.9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평가)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 등 후속 조치를 과제 공고 혹은 추진 초기에 명문화하여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 가능 (혁신법 제12조 제3항) ※ 후속 조치의 상세 내용은 부처·전문기관에서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설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한 과제의 경우,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목표 미달인 경우에도 연구수행 과정 자체가 의미있는 연구의 경우, 후속 연구개발과제 적극 연계 등 인센티브 부여 가능 	<p>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사항 반영(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과제평가 추진사항)</p>
<p>p.87 바. 이의신청</p> <p style="text-align: center;">————— 이의신청 범위 —————</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이하 생략) </div>	<p>p.90 바. 이의신청</p> <p style="text-align: center;">————— 이의신청 범위 —————</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행정오류의 경우 • (이하 생략) </div>	<p>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사항 반영(전문기관 개정 수요)</p>

<p>p.89</p> <p>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 등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할 경우, 참여제한 또는 재재부가금 부과 가능(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 	<p>p.89</p> <p>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 등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할 경우,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 	<p>오타 수정</p>
<p>p.90</p> <p>바. 이의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p>p.90</p> <p>바. 이의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계산함 	<p>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사항 반영</p>
<p>p.124</p> <p>아. 개정사항 비교</p> <p><신설></p>	<p>p.127</p> <p>아. 개정사항 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법 제21조 관련 법 개정안이 2026. 2. 19. 공포되었으며, 2026. 8. 20. 시행 예정 ● 법제21조 관련 주요 법 개정 예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범부처 보안지침을 수립하되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로 별도 보안지침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 	<p>'26년도 2월 19일 혁신법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p>

대책을 마련하도록 체계를 정비함(제21조제1항 개정 및 제2항·제3항 신설)

- 잠재적 중요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을 신설함(제21조제5항 신설)
- 보안과제의 성과 소유권 이전시 의무와 연구개발기관의 보안관리 조치 의무를 혁신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연구보안 관리를 체계화 함(제21조제6항·제7항 신설 및 제8항부터 제10항 개정).
- 연구현장의 보안 업무 부담 완화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연구보안 정책 이행을 지원할 전담 집행조직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2 신설)

구분	종전	개정
국외수혜정보보고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8호 및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4.2.6.시행)
보안과제 분류	-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 '24.2.6.시행)
보안과제 분류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로 보안과제	1.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구분	종전	개정
민감과제의 신설	-	잠재적 중요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을 신설함(법제21조제5항 신설).
보안관리 조치 대상 확대 개정	보안과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이행(시행령제46조)	보안 및 민감과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이행(법제21조8항)
보안지침 및 보안대책 사항 신설 및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23.11.20시행)」에 따라 일부 부처 및 연구개발기관이 보안대책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범부처 보안지침을 수립하되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로 별도 보안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체계를 정비함(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제3항 신설).

구분	종전	개정	구분	종전	개정
위원회의 검토 생략	분류 가능한 경우 (보안대책 제3조 제1항)	2. 자유공모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보안대책 제3조 제1항 제1호~3호 신설, '23.11.20 개정)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조항 신설	관련 내용이 보안대책(고시) 제15조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에 기재	보안과제의 성과 소유권 이전시의 의무를 보안대책(고시)에서 혁신법으로 상향 입법 (법제21조의제6항 및 제7항)
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연구개발 평가단의 판단의 의거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보안대책 제14조 제3항 신설, '23.11.20 개정)	연구보안 전담조직 신설	-	연구보안 전담 집행조직 근거 마련 (제21조의 2신설)
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지정	연구보안 책임자 (보안대책 제5조 제1항)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로 명칭 변경 (보안대책 제5조 제1항 및 제2항, '23.11.20 개정)			
p.125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p> <p>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② 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2.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p.128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p> <p>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② 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2.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p>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 협약 시 연구개발비 지급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해당 일정을</p>

3.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 설>

1.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신 설>

3.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연구개발비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준수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p.126

<표 2-15> 연구시설·장비 심의체계

구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주최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심의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정출연기본사업)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출연기본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p.129

<표 2-15> 연구시설·장비 심의체계

구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주최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심의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정출연기본사업)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출연기본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
 예정(6월
 이전)으로
 예산편성시점의
 본심의는
 '26년부터,
 예산집행시점의

	※ 타 법령 또는 규칙상 규정된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포함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 타 법령 또는 규칙상 규정된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포함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상시심의 및 연구개발과제평가 단 심의 등은 '27년부터 적용 예정
<p>※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조 <신설></p>	<p>※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조 ※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안)'(제1차 과학기술관 계장관회의, '25.11.24.)에 따라 '27년도에 심의기준금액이 상향될 예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확인할 것</p>	<신설>	<p>p.130</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Q4.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비가 3천만원 미만이라면 심의 대상인지?</p> <p>-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투입된다면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용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은 심의 대상임. ※ 다만,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비 1억원 이상임 ※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용에 다수의 재원이 포함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2부 2장(연구시설장비의 심의) 참고</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신설></p>	<p>p.130</p> <p>Q5. 구축이 완료된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A)에 신규 보조장치/부대장비(B) 구축 예정으로 연구장비(A)에 보조장치/부대장비(B)를 추가하여 변경 심의를 득해야 하는지, 보조장치/부대장비(B)를 대상으로 신규 심의를 받으면 되는지?</p> <p>- 총 구축금액은 주장비 + 부대장비 + 보조장치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장비 구축 시 부대장비 및 보조장치를 함께 구축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도입 심의는 구축 전 진행되어야 하므로 구축이 완료된 건은 심의대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위의 부대장비를 별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추가로 구축하는 부대 장비만을 대상으로 신규 심의가 필요함.</p> <p>※ 기 구축 연구시설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부대장비의 심의대상 여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2부 2장(연구시설장비의 심의) 참고</p>	
<p>p.129</p> <p style="text-align: center;">(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p> <p>제5조(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수 있다.</p>	<p>p.132</p> <p style="text-align: center;">(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p> <p>제5조(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삭제></p>	<p>단서의 내용은 본문과 동일하여 불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삭제 (개정 필요)</p>

<p>p.133 제9절 연구개발 수행의 전념 1.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나.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p><표 2-16> 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185 548 996 708"> <thead> <tr> <th>구분</th> <th>책임자</th> <th>책임자 외 연구자</th> </tr> </thead> <tbody> <tr> <td>주관연구개발기관</td> <td>연구책임자</td> <td rowspan="2">참여연구자</td> </tr> <tr> <td>공동연구개발기관</td> <td>참여연구자</td> </tr> </tbody> </table> <p>※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p>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p>p.133 제9절 연구개발 수행의 전념 2.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나.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p><표 2-16> 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1026 548 1823 708"> <thead> <tr> <th>구분</th> <th>책임자</th> <th>책임자 외 연구자</th> </tr> </thead> <tbody> <tr> <td>주관연구개발기관</td> <td>연구책임자</td> <td rowspan="2">참여연구자</td> </tr> <tr> <td>공동연구개발기관</td> <td>참여연구자</td> </tr> </tbody> </table> <p>※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근접지원인력 및 연구지원인력은 제외</p>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p>의미 명확화 : 5공의 예외 사항 추가</p>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p>p.133 제9절 연구개발 수행의 전념 3.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나.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연구 과제 적용 예외 기준(특례) <p>(생략)</p> <p>※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p>	<p>p.133 제9절 연구개발 수행의 전념 4.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나.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연구 과제 적용 예외 기준(특례) <p>(생략)</p> <p>※ 공동기관형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p>																	

p.132

마.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 「**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과
기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 '24.10.31)

**① 신규과제 중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3책5공 적용과제 수에 관계없이 '25년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5년 ~ 과제 종료 시

**②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와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3책5공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하나의 사업에 대해 다부처가 분담하고 부처별 예산 지급, 과제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전문기관과 각각 협약을 체결하여 1개 과제가 외형상 복수의 과제로 분리되는 경우
 - * 과제번호는 다르나, 과제명·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연구내용 및 절차 등이 동일한 과제를 말함
 - 연구개발과제 수는 주관부처와 협약 시 1개로 산정하고 협력부처와 동일 지정과제 협약 시에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적용제외할 필요
- (적용제외 기간) '25년 ~ 과제 종료 시

〈신설〉

p.135

마.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과
기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 '25.10.22)

**① 신규과제 중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3책5공 적용과제 수에 관계없이 '25년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6년 ~ 과제 종료 시

**②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와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3책5공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하나의 사업에 대해 다부처가 분담하고 부처별 예산 지급, 과제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전문기관과 각각 협약을 체결하여 1개 과제가 외형상 복수의 과제로 분리되는 경우
 - * 과제번호는 다르나, 과제명·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연구내용 및 절차 등이 동일한 과제를 말함
 - 연구개발과제 수는 주관부처와 협약 시 1개로 산정하고 협력부처와 동일 지정과제 협약 시에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적용제외할 필요
- (적용제외 기간) '26년 ~ 과제 종료 시

**③ 신규과제 중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로서 부처
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26년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안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수 적용제외
과제(안) 내용
반영

※ 기술사업화 정의: 「기술이전촉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를 민간부분으로 이전·사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R&D과제

- **(적용제외 요건)** 사업목적, 사업의 성과지표 및 주요내용 등을 기준으로 종합 판단하였을 때 **기술사업화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수행주체가 **공공기술 성과활용 기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업**이거나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연구자)** 및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이 공공기술을 수요기업(수요자 포함)으로 **이전 사업화하는 과제**
 - ① **사업목적**에 기술사업화, 창업, 제품화 등 명시 ② **성과지표**에 기술이전, 매출, 창업율 등이 포함 ③ **지원내용**에 TRL(기술성숙도) 제고, 실용화(시험, 분석, 평가, 인증, PoC, 검증, 실증 등), 상용화, 시제품 제작, 기업성장지원 등 포함 ④ 이외 **소관부처에서 기술사업화로 판단하는 과제**
- **(적용제외 비율)** 부처별의 기술사업화에 해당되는 3책5공 면제 과제 수가 각 부처의 '26년 신규과제 중 15% 미만으로 되도록 제한
 - '26년 상반기에 각 부처의 기술사업화 관련 **3책5공 면제 과제** 수를 조사하여 **적용제외 비율** 등을 추가 검토 추진
- **(적용제외 기간)** '26년 ~ 과제 종료 시

〈3책5공제도 적용제외 과제 비교〉

'25년 적용제외 과제('24.10월 운영위)	'26년 적용제외 과제(안)
1) 연평균 6천만원 이하	(좌동)
2) 동일 과제를 다수 부처와 각각 협약하는 과제	(좌동)
-	(신설) 기술사업화 관련 과제

<p>p.148</p> <p>Q3.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참여연구원인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개발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과 연구개발 기관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조치 필요 -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2024.7월, p.89)」를 활용 할 수 있음 	<p>p.147</p> <p>Q3.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참여연구원인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약시 특수관계자등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경우 협약서에 따른 조치 필요 - 협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과 연구개발기관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조치 필요 	<p>혁신법 시행규칙 개정(26.3.25.) 사항 반영</p>
<p>p.157</p> <p>1. 개요</p> <p>가. 규정의 취지(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연구 현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극 해석으로 적용가능한 특례 사항을 안내 <p>※ 총괄관리자 전권 위임, 자율형 독립조직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예정</p>	<p>p.160</p> <p>1. 개요</p> <p>가. 규정의 취지(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연구 현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극 해석으로 적용가능한 특례사항을 안내 <p>※ 총괄관리자 연구관리 권한 위탁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예정</p>	<p>개정 추진 현황에 따라 내용 수정</p>

〈표 2-20〉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 목록(과기정통부 공고 제2025-124호, '25.2월 기준)

연번	차수	세부사업명	소관부처	사업기간
1	24-1	한계도전R&D프로젝트	과기정통부	'24~'28
2	24-1	디지털혁신도전선도기술개발(구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4~'28
3	24-1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사업	산업부	'22~'31
4	24-1	한국형ARPA-H프로젝트	복지부	'24~'32
5	24-1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PM기획)	방사청	'19-계속
6	24-1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구 STEAM연구)	과기정통부	'08-계속
7	24-1	소재혁신양자시뮬레이터개발	과기정통부	'23~'27
8	24-1	상시재난감시용성충권드론기술개발	우주항공청	'22~'25
9	24-1	용융염원자로(MSR)원천기술개발	과기정통부, 해수부	'23~'26
10	24-1	인공어체세포기반재생치료기술개발사업	과기정통부, 복지부	'24~'29
11	24-1	플라즈마활용폐유기물원료화	환경부, 과기정통부	'22~'25
12	24-1	달탐사2단계	우주항공청	'24~'33
13	24-1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산업부, 과기정통부	'23~'28
14	24-1	차세대 6G 산업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4~'28
15	24-1	소재부품기술개발(첨단전략산업초격차-이차전지)	산업부	'24~'28
16	24-1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과기정통부, 산업부	'24~'28
17	24-1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2~'26
18	24-1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우주항공청	'23~'32
19	24-1	개인기초연구(우수연구-리더연구)	과기정통부	'09-계속
20	24-1	집단연구지원(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IRC)	과기정통부	'23-계속
21	24-2	리튬메탈음극면용적활용을위한모듈형LEA핵심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5~'29
22	24-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전략기술테마별프로젝트)	중기부	'23-계속
23	24-2	초고집적반도체용vdW소재및공정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5~'30
24	24-2	RNA바이러스감염병(DiseaseX)대비항바이러스 치료제개발사업	복지부	'23~'29
25	24-2	고강도탄소저감콘크리트신기술개발	국토부	'25~'28
26	24-2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	과기정통부	'23~'28
27	24-2	전기차배터리시스템일체형급속무선충전기술개발	산업부	'25~'28
28	24-2	초고속하이퍼튜브철도인프라핵심기술개발사업	국토부	'25~'27
29	24-2	SDV아키텍처를위한In-Vehicle초고속통신반도체기술개발	산업부	'25~'29
30	24-2	개인기초연구(우수연구-개척형)	과기정통부	'25-계속
31	24-2	디지털콜럼버스프로젝트	과기정통부	'25~'35
32	24-2	인간지향적차세대도전형시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5~'29

〈표 2-20〉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 목록(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제4회 안건 제3호, '25.12월 기준)

연번	유형	세부사업명	소관부처	사업기간
1	일차 관리형	한계도전R&D프로젝트	과기정통부	'24~'28
2		디지털혁신도전선도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4~'27
3		한국형ARPA-H프로젝트	보건복지부	'24~'32
4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PM과제)	방위사업청	'19-계속
5		소재혁신양자시뮬레이터개발	과기정통부	'23~'27
6		용융염원자로(MSR)원천/혁신기술개발	과기정통부, 해수부	'23~'26
7		인공어체세포기반재생치료기술개발사업	과기정통부, 복지부	'24~'29
8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	우주항공청	'24~'33
9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	기후부, 과기정통부	'23~'28
10		차세대네트워크(6G)산업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4~'28
11		소재부품기술개발(첨단전략산업초격차-이차전지)	산업통상부	'24~'28
12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과기정통부, 산업부	'22~'28
13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과기정통부	'22~'26
14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R&D)	우주항공청	'23~'32
15		리튬메탈음극면용적활용을위한모듈형LEA핵심기술개발사업	과기정통부	'25~'29
16		투융사연계기술개발(디텍트&앨리언시프젝트)	중소벤처기업부	'23-계속
17		초고집적반도체용vdW소재및공정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5~'30
18	RNA바이러스감염병(DiseaseX)대비항바이러스치료제개발사업	보건복지부	'23~'29	
19	전기차배터리시스템일체형급속무선충전기술개발	산업통상부	'25~'28	
20	초고속하이퍼튜브철도인프라핵심기술개발사업	국토교통부	'25~'27	
21	SDV아키텍처를 위한In-Vehicle초고속통신반도체기술개발	산업통상부	'25~'28	
22	자원순환형초고에너지밀도주유형알루미늄공기전지	과기정통부	'26~'30	
23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6~'30	
24	우주소형무인제조플랫폼실증사업	우주항공청	'26~'30	
25	초고속하이퍼튜브반도체핵심기술개발	국토교통부	'26~'28	
26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사업	산업통상부	'22~'31	
27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과기정통부	'08-계속	
28	개인기초연구(리더연구-유형A)	과기정통부	'09-계속	
29	집단연구지원(선도연구센터-IRC)	과기정통부	'23-계속	
30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	과기정통부	'23~'28	
31	개인기초연구(혁신연구-도전형)	과기정통부	'25-계속	
32	디지털콜럼버스프로젝트	과기정통부	'25~'35	
33	인간지향적차세대도전형시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5~'29	
34	미래판기술프로젝트	산업통상부	'25~'34	
35	항노화및연노화재생의료중개임상연구	보건복지부	'26~'32	
36	고강도무시멘트콘크리트재규 및 설계-시공기술개발	국토교통부	'25~'28	

<p>p.160</p> <p>2. 총괄관리자(IPL, Innovative Program Leader)의 밀착 관리</p> <table border="1" data-bbox="183 414 987 649"> <thead> <tr> <th>구분</th> <th>제도개선</th> <th>현장 파급 효과</th> <th>관련 조문</th> </tr> </thead> <tbody> <tr> <td>총괄관리자 (IPL) 밀착관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고절차 생략, 수요조사 미반영 협의체결 기한 연장 등 (유연한 기획 및 관리) • 총괄관리자 권한 강화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L 전문성 및 밀착관리역량 기반 신속한 의사결정 </td> <td> 혁신법 제9조, 제14조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27조 </td> </tr> </tbody> </table> <p>※ 자율형 독립조직 운영 및 총괄관리자 권한 위탁 관련 사항은 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예정</p>	구분	제도개선	현장 파급 효과	관련 조문	총괄관리자 (IPL) 밀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고절차 생략, 수요조사 미반영 협의체결 기한 연장 등 (유연한 기획 및 관리) • 총괄관리자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L 전문성 및 밀착관리역량 기반 신속한 의사결정 	혁신법 제9조, 제14조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27조	<p>p.164</p> <p>2. 총괄관리자(IPL, Innovative Program Leader)의 밀착 관리</p> <table border="1" data-bbox="1021 414 1813 649"> <thead> <tr> <th>구분</th> <th>제도개선</th> <th>현장 파급 효과</th> <th>관련 조문</th> </tr> </thead> <tbody> <tr> <td>총괄관리자 (IPL) 밀착관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고절차 생략, 수요조사 미반영 협의체결 기한 연장 등 (유연한 기획 및 관리) • 총괄관리자 권한 강화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L 전문성 및 밀착관리역량 기반 신속한 의사결정 </td> <td> 혁신법 제9조, 제14조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27조 </td> </tr> </tbody> </table> <p><삭제></p>	구분	제도개선	현장 파급 효과	관련 조문	총괄관리자 (IPL) 밀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고절차 생략, 수요조사 미반영 협의체결 기한 연장 등 (유연한 기획 및 관리) • 총괄관리자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L 전문성 및 밀착관리역량 기반 신속한 의사결정 	혁신법 제9조, 제14조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27조	<p>p.157에 언급된 내용과 동일하여 삭제</p>
구분	제도개선	현장 파급 효과	관련 조문															
총괄관리자 (IPL) 밀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고절차 생략, 수요조사 미반영 협의체결 기한 연장 등 (유연한 기획 및 관리) • 총괄관리자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L 전문성 및 밀착관리역량 기반 신속한 의사결정 	혁신법 제9조, 제14조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27조															
구분	제도개선	현장 파급 효과	관련 조문															
총괄관리자 (IPL) 밀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고절차 생략, 수요조사 미반영 협의체결 기한 연장 등 (유연한 기획 및 관리) • 총괄관리자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L 전문성 및 밀착관리역량 기반 신속한 의사결정 	혁신법 제9조, 제14조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27조															
<p>p.163</p> <p>바. 평가단 구성·운영</p>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p>Q7. 평가단 구성 시 과기정통부 장관의 평가위원 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한지?</p> </div> <p>- 평가위원 풀에 포함되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평가시점에 평가위원 풀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 평가위원으로 등록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p>	<p>p.167</p> <p>바. 평가단 구성·운영</p>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p>Q7. 평가단 구성 시 과기정통부 장관의 평가위원 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한지?</p> </div> <p>- 평가위원 풀에 포함되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삭제></p>	<p>IRIS 공지에 따르면 임시 평가위원 기능을 2026년 1월 21일부로 종료함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 관련 제도는 향후 추가 제도개선 방향 수립하여 안전화 하는 방향 검토.</p>																

<p>p.163</p> <p>Q8. 혁신도전형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p> <p>- 훈령·고시·지침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u>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총괄관리자에게 전권이 위임되는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u></p>	<p>p.167</p> <p>Q8. 혁신도전형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p> <p>- 훈령·고시·지침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u><삭제></u></p>	<p>혁신법 개정이 완료된 후 해당 내용 반영 필요</p>
<p>p.17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부담기준(혁신법 시행령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비율은 아래의 표(혁신법 시행령 별표1)와 같으며,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산출할 때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포함 - <u>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해당 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연차별로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u> 	<p>p.17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부담기준(혁신법 시행령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비율은 아래의 표(혁신법 시행령 별표1)와 같으며,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산출할 때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포함 - <u>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금액의 부담 시기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u> 	<p>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부담 연구비 납부시기 유연화

<p>p.173</p> <p>다. 연구개발비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지급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지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 - 건별지급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별로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지급 ● <신설> ●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 (이하 생략) 	<p>p.177</p> <p>다. 연구개발비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지급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지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 - 건별지급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별로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지급 ●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에 맞추어 연구개발비를 지급해야 함 - 다만, 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 (이하 생략) 	<p>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시 연구개발비 지급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해당 일정을 준수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	---

<p>p.175 바. Q&A</p> <p>Q3.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에 언제까지 납입하여야 하는지?</p> <p>- 해당 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연차별로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p> <p>-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p>	<p>p.179 바. Q&A</p> <p>Q3.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에 언제까지 납입하여야 하는지?</p> <p>- 해당 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금 부담 시기를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연도별로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p> <p>- 다만 협약 시 현금 부담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p> <p>-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p>	<p>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 기관부담 연구비 납부시기 유연화</p>
<p>p.181 라.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특례</p> <p>●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1]을 따름</p>	<p>p.185 라.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특례</p> <p>●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1]을 따름</p> <p>※ 단,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1]과 달리 정할 수 있음</p>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p> <p>- 정부출연기관 PBS 단계적 폐지에 따른 기본사업 계상기준 명확화</p>

<p>p.183 바. Q&A <신규></p>	<p>p.187 바. Q&A</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Q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연구소가 동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본원과 부설연구소 간 연구개발비 이체는 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본원 간 발생하는 비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상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연구소 간 공동 연구수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연구개발비 이체는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의 대가성이 없는 범위 내 내부거래 제한의 예외로 인정함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 또는 협약에서 이를 인정한 사업에 한하여 적용됨 </div>	<p>출연연 본원-부설기관 간 공동연구 가능 가이드라인 제시</p>
<p>p.1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6조제2항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p>p.19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6조제2항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p>개정사항 반영</p>

<p>p.18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인건비 계상 및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의 차액이 연금인건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p>p.19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인건비 계상 및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의 차액이 출연금인건비계상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용어 명확화</p>
<p>p.19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참여확약의 변경은 ①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②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③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④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⑤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가능 ※ 연구참여확약서 양식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2호(학생인건비통합관리 외) 서식]을 사용 	<p>p.2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참여확약의 변경은 ①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②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③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④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⑤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가능 ※ 연구참여확약서 양식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제2호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2호(학생인건비통합관리 외) 서식]을 사용 	<p>고시 별지 제1호의2 신설 반영</p>
<p>p.19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월 기준 학사과정 130만 원 이상, 석사과정 220만 원 이상, 박사과정 300만 원 이상으로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과정생이 있는 기관(대학)은 통합과정생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함 	<p>p.2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월 기준 학사과정 130만 원 이상, 석사과정 220만 원 이상, 박사과정 300만 원 이상으로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과정생이 있는 기관(대학)은 통합과정생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도 학칙에 의거하여 별도로 설정하여야 함 	<p>문구 수정 (의미 명확화)</p>

<p>p.196</p> <p>다.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p> <p>※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 필요 -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시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p>p.201</p> <p>다.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p> <p>※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 필요 -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시 원 소속 기관을 통해 학적 상태 및 총인건비계상을 확인 필요 -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p>문구 수정 (의미 명확화)</p>
<p>p.198</p> <p>Q4.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연구생으로 등록된 수료생’도 학생연구자에 해당함. 다만, 별도의 연구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각 학교의 자체 인정 기준(수료 후 등록생, 수료 후 논문지도 과정으로 학기 등록한 과정생 등)에 따라 연구생으로 보고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p> <p>- 지급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에 유사한 제도로 학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로 볼 수 있으며 학생연구자로서 연구 참여 및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함</p>	<p>p.203</p> <p><u>삭제</u></p>	<p>기존 Q10(현 Q9)와 내용 일부 중복되어 Q4 삭제, Q5 이후 번호를 앞당김</p>
<p>p.198</p> <p>Q6.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도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p> <p>- 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군사훈련 기간 동안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p> <p>- 이 경우, 해당 월에 일할계산 없이 연구참여확약서에 기재한 지급액만큼 모두 지급할 수 있음</p> <p>※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p>	<p>p.203</p> <p>Q5. 군위탁생 신분 또는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도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p> <p>- 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한 학생연구자의 직장 소속 또는 연수 훈련 시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 직장 등의 내부규정 또는 병무 관청 등 외부 규정으로 이를 금지하는지 확인 필요</p> <p>-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월에 일할계산 없이 연구참여확약서에 기재한 지급액만큼 모두 지급할 수 있음</p> <p>※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p>	<p>문구 수정 (의미 명확화)</p>

<p>p.199</p> <p>Q7. 대학·정부출연기관에서 타 기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유의할 점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은 각 기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자가 수급하는 학생인건비 총액은 원 소속 대학 계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휴학생은 휴학한 대학을 원 소속 기관으로 봄) - 대학의 경우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제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함.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에서는 지급하려는 금액과 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10항 및 제40조 제7항에 따라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대학에 공문 등으로 통보하여 소속 대학에서 해당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하 생략) 	<p>p.204</p> <p>Q6. 대학·정부출연기관에서 타 기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유의할 점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은 각 기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자가 수급하는 학생인건비 총액은 원 소속 대학 계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휴학생은 휴학한 대학을 원 소속 기관으로 봄) - 대학의 경우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제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함.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에서는 지급하려는 금액과 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10항 및 제40조 제7항에 따라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대학에 공문 등으로 통보하여 소속 대학에서 해당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하 생략) 	<p>문구 수정 (의미 명확화)</p>
<p>Q10.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학생연구자로 인정하는데, 학칙 내 연구생 등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수료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에 따라 수료 후 등록생, 수료 후 논문지도 과정으로 학기를 등록한 과정생 등 학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로 인정되며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함 • 학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 참여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과제의 인건비 지급 가능 	<p>Q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학생연구자로 인정하는데, 학칙 내 연구생 등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수료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에 따라 수료 후 등록생, 수료 후 논문지도 과정으로 학기를 등록한 과정생 등 학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로 인정되며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함 • 학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 참여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과제의 인건비 지급 가능 	<p>제목에 내용 일부 추가(기존 Q4 제목 활용)</p>

<p>p.201</p> <p>바.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서식(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관련)</p>	<p>p.206</p> <p>바.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서식(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제1호의2·제2호 서식 관련)</p> <p>-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 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2026. 1. 28., 일부개정) 별지 제1호/제2호 개정본과 제1호의2 신설본으로 수정삽입</p>	<p>별지 제1호, 제2호 개정사항 반영, 별지 제1호의2 신설 반영</p>
<p>p.209</p> <p>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25.3월 기준) <신설></p> <p>※ 기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관련 내용은 본권 제3장 제 18절 혹은 별권1 참조</p> <p>● 총 70개 기관(대학 62개, 출연(연) 4개, 특정(연) 4개) (이하 표 생략)</p>	<p>p.218</p> <p>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2026년 3월 기준)</p> <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165호 기준이며, 2026년 4월 이후 지정 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고 참고 가능</p> <p>※ 기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관련 내용은 본권 제3장 제18절 혹은 별권1 참고</p> <p>● 총 72개 기관(대학 64개, 출연(연) 4개, 특정(연) 4개) (이하 표 생략)</p>	<p>2026년 3월 기준으로 현행화, 이후 지정 건 확인 경로 안내</p>

<p>p.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 <신 설> <p>(이하 생략)</p>	<p>p.2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관 단위 연구시설·장비의 통합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과제별로 안분할 수 있음 <p>(이하 생략)</p>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단위 연구시설·장비 구축 시 과제별 자원 분담 가능 여부 명확히 함
<p>p.213</p> <p><신 설></p>	<p>p.222</p> <p>Q3. 연구시설·장비의 통합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과제별로 안분할 때 연구시설·장비 심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절차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장비를 기관 단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재원으로 구축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 순서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심의 및 협약 변경 절차를 총괄하여 진행하여야 함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은 심의 및 협약 변경 결과를 통합구축과 관련된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p>연구현장 의견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단위 연구시설·장비의 통합구축 시 심의, 협약 변경 절차 명확화

	<table border="1"> <thead> <tr> <th>순번</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통합구축에 가장 많은 재원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td> </tr> <tr> <td>2</td> <td>통합구축 연구개발과제의 자원 비율이 동일한 경우, 상호(소관 중 양행정기관) 간 협의하여 정한 연구개발과제</td> </tr> </tbody> </table> <p>- 이 경우 개별 연구개발과제가 부담하는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다수 과제 재원을 합산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모든 과제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사전승인 대상으로 보며, 상기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p>	순번	기준	1	통합구축에 가장 많은 재원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2	통합구축 연구개발과제의 자원 비율이 동일한 경우, 상호(소관 중 양행정기관) 간 협의하여 정한 연구개발과제	
순번	기준							
1	통합구축에 가장 많은 재원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2	통합구축 연구개발과제의 자원 비율이 동일한 경우, 상호(소관 중 양행정기관) 간 협의하여 정한 연구개발과제							
<p>p.214</p> <p>나. 사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유형별 사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 : <u>공통사용기준 참조</u> - 영영리기관 :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한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p>p.223</p> <p>나. 사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유형별 사용기준 및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 :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00만 원 이하의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연차별 1,000만 원 이내로 제한한다) 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수확인서 외에 추가적인 증명자료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자체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u> - 영리기관 :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한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p>'25년도 행정제도 개선(안)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p> <p>소액 연구재료비 증빙 간소화</p>						

<p>p.212 다.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4〉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증명자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183 406 298 454">구 분</th> <th data-bbox="298 406 987 454">증 명 자 료</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83 454 298 803">연구시설·장비비</td> <td data-bbox="298 454 987 803"> <p>(생략)</p> <p>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 (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p> <p>(생략)</p> </td> </tr> </tbody> </table>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시설·장비비	<p>(생략)</p> <p>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 (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p> <p>(생략)</p>	<p>p.221 다.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4〉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증명자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1010 406 1125 454">구 분</th> <th data-bbox="1125 406 1813 454">증 명 자 료</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010 454 1125 803">연구시설·장비비</td> <td data-bbox="1125 454 1813 803"> <p>(생략)</p> <p>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p> <p>※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 (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p> <p>(생략)</p> </td> </tr> </tbody> </table>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시설·장비비	<p>(생략)</p> <p>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p> <p>※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 (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p> <p>(생략)</p>	<p>연구현장 의견 반영 - 검수자를 참여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로 한정하지 않고,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p>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시설·장비비	<p>(생략)</p> <p>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 (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p> <p>(생략)</p>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시설·장비비	<p>(생략)</p> <p>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p> <p>※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 (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p> <p>(생략)</p>									
<p>p.215 다.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5〉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183 998 298 1047">구 분</th> <th data-bbox="298 998 987 1047">증 명 자 료</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83 1047 298 1388">연구재료비</td> <td data-bbox="298 1047 987 1388"> <p>(생략)</p> <p>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 (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p> </td> </tr> </tbody> </table>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재료비	<p>(생략)</p> <p>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 (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p>	<p>p.224 다.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5〉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1010 998 1125 1047">구 분</th> <th data-bbox="1125 998 1813 1047">증 명 자 료</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010 1047 1125 1388">연구재료비</td> <td data-bbox="1125 1047 1813 1388"> <p>(생략)</p> <p>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p> <p>※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 (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p> </td> </tr> </tbody> </table>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재료비	<p>(생략)</p> <p>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p> <p>※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 (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p>	<p>연구현장 의견 반영 - 검수자를 참여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로 한정하지 않고,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p>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재료비	<p>(생략)</p> <p>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 (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p>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재료비	<p>(생략)</p> <p>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p> <p>※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 (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p>									

<p>p.226</p> <p>Q5.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연구, 연, 월 단위)의 제한이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소프트웨어 계약 지연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의 종료 시까지 소프트웨어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산 시 연구개발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 상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p>p.235</p> <p>Q5.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연구, 연, 월 단위)의 제한이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기간이 과제 수행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기간 계약 단위를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기간 계약 단위 이상의 기간 계약 단위가더라도 최소기간 계약 단위보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최소기간 계약단위 이상의 기간 계약단위로 계상할 수 있음 - 상기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 계약 지연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의 종료 시까지 소프트웨어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산 시 연구개발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 상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p>소프트웨어 최소 계약 단위 인정 기준의 해석 사례 추가</p>
<p>p.232</p> <p>마. Q&A</p> <p>Q1.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는 연구수당(최대액)은 해당 과제의 수정인건비의 20%를 넘을 수 없음 - 연구수당 계상금액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 +20%'를 초과할 수 없음 (직접비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100% 지급 가능) - 참여연구자가 복수인 경우, 1명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의 최대금액은 '연구수당 실제 계상액'의 70%까지임 	<p>p.241</p> <p>마. Q&A</p> <p>Q1.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는 연구수당(최대액)은 해당 과제의 수정인건비의 20%를 넘을 수 없음 - 연구수당 계상금액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 +20%'를 초과할 수 없음 (직접비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100% 지급 가능) - 참여연구자가 1명인 경우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연구수당 실제 계상액'의 100%임 - 참여연구자가 복수인 경우, 1명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의 최대금액은 '연구수당 실제 계상액'의 70%까지임 	

<p>p.2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 인력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 가능함 - <신설> -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계상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장려금인 연구수당과는 다름 	<p>p.2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해당 과제의 수정인건비 중 각 개인별 인건비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 가능함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보안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의 총액은 해당 과제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계상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장려금인 연구수당과는 다름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수당 계상 기준을 명확화 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자도 보안과제에 참여 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함
---	--	---

p.241

가. 사용용도

간접비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조 제1호 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 ▶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 기간 동안의 급여
 - ▶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 ▶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 ▶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 ▶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함) 기간 동안의 급여
 - ▶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 (이하 생략)

p.249

가. 사용용도

간접비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조 제1호 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 ▶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 기간 동안의 급여
 - ▶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 ▶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 ▶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 ▶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함) 기간 동안의 급여
 - ▶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 (이하 생략)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 연구중단, 과제
공백 등의
사유로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인력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는 주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포함하도록 함

<p>p.2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유형별 간접비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은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p style="color: red;"><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 <p style="text-align: right;">(이하 생략)</p>	<p>p.25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유형별 간접비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은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p style="color: blue;">※ 단,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 <p style="text-align: right;">(이하 생략)</p>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기관 PBS 단계적 폐지에 따른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명확화
<p>p.254</p> <p>나. 정부지원금이자 사용용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정부지원금이자 사용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동안 정부지원금이자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이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연구수당을 제외한 직접비 항목에 산입하여 사용함) - 연구개발에 재투자 -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div>	<p>p.263</p> <p>나. 정부지원금이자 사용용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정부지원금이자 사용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및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기간동안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이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연구수당을 제외한 직접비 항목에 산입하여 사용함) - 연구개발에 재투자 -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div>	<p>2023년 회계연도 국회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이자수입은 국고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p>이자에 한정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한정됨)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한정됨)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 하고 각각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이자 중 정부지원금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자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사용 -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이자 :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별도의 승인없이 아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한정됨)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한정됨)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한정됨)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연구개발비 이자 중 정부지원금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사용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자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사용 -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이자 :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p>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연구개발에 재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p>
<p>p.255 라. Q&A <신설></p>	<p>p.264 라. Q&A</p> <p>Q3. 정부지원금 이자는 국고 반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개정되었는데, 시행일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적용 방식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법령은 시행일(26.3.10.) 이전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도 적용되며, 해당 과제에서 발생한 정부지원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다만, 시행일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이미 사용한 정부지원금 이자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 이 경우, '이미 사용한 정부지원금 이자'의 인정 여부는 연구개발기관이 시행일 이전 정부지원금 이자 사용금액(통합Ezbaro의 경우 이자 사용용도)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로 판단함 	<p>시행령 시행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정부지원금 발생이자 국고반납 원칙 적용 시기 명확화</p>

<p>p.256</p> <p>가.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전액(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이자 포함) <p>나.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단계가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을 적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 사용실적보고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현물부담 확인서(해당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해당 시) 	<p>p.265</p> <p>가.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전액(정부지원금이자 포함) <p>나.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단계가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자를 사용한 경우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 사용실적 및 사용내역을 포함)을 적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 사용실적보고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현물부담 확인서(해당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해당 시) 	<p>2023년 회계연도 국회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이자 사용내역은 집행 내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하여 후속 점검을 받도록 함</p>
--	---	--

p.257

다. 연구개발비 정산의 특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신설>

p.266

다. 연구개발비 정산의 특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비 규모와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비 규모와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는 연차별 연구개발비 평균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이하 “소액 과제”라 한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해당월에 종료되는 소액 과제 수를 기준으로 1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선별하는 것을 말함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15조제1항(단,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제외)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된 연구개발과제
 -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이 존재하는 연구개발과제
 -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

‘25년도
행정제도개선(안)
에 따른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소액과제 대상 샘플링 정산 도입
- 샘플정산 수행 주체(중앙행정기관의 장) 명시

<p>·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차별 연구개발비 평균 금액을 계산할 때의 연차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지원되는 연차를 기준으로 함 • 위 방법으로 선별되는 과제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선별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 할 수 있음</p> </div> <p>※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월 필수 선별 대상 과제 수가 해당 월에 종료되는 소액 과제 수 기준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월의 모든 필수 선별 대상 과제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p> <p>·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p>	
<p>p26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 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 * 운영현황 점검 완료 연도의 1월 1일 기준 직전 5년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 초과하거나 해당연도 학생인건비(전년도 잔액 포함) 지급비율이 기관 통산 2회 이상 50% 미만일 경우 등 	<p>p.27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운영 결과를 점검 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 * 운영 결과 점검 완료 연도의 1월 1일 기준 직전 5년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 초과하거나 해당연도 학생인건비(전년도 잔액 포함) 지급비율이 기관 통산 2회 이상 50% 미만일 경우 등 	<p>(의미 명확화)</p>

<p>p.268 제15절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절차 사.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종전</th> <th>혁신법</th> </tr> </thead> <tbody> <tr> <td>정산대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과제 추출 정산(5% 이상) - 연구지원 체계평가 최우수 기관 제외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과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기관, 자체정산 역량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보고서 및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출로 정산 대체 가능 </td> </tr> </tbody> </table>	구분	종전	혁신법	정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과제 추출 정산(5% 이상) - 연구지원 체계평가 최우수 기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과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기관, 자체정산 역량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보고서 및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출로 정산 대체 가능 	<p>p.270 제15절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절차 사.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종전</th> <th>혁신법</th> </tr> </thead> <tbody> <tr> <td>정산대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과제 추출 정산(5% 이상) - 연구지원 체계평가 최우수 기관 제외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과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기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 자체정산 역량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보고서 및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출로 정산 대체 가능 </td> </tr> </tbody> </table>	구분	종전	혁신법	정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과제 추출 정산(5% 이상) - 연구지원 체계평가 최우수 기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과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기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 자체정산 역량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보고서 및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출로 정산 대체 가능 	<p>○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개정 사항 반영 * 연구개발비 규모와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p>
구분	종전	혁신법												
정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과제 추출 정산(5% 이상) - 연구지원 체계평가 최우수 기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과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기관, 자체정산 역량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보고서 및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출로 정산 대체 가능 												
구분	종전	혁신법												
정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과제 추출 정산(5% 이상) - 연구지원 체계평가 최우수 기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과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기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 자체정산 역량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보고서 및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출로 정산 대체 가능 												
<p>p.269</p> <table border="1"> <tbody> <tr> <td>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 중 일부를 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td> <td>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td> </tr> <tr> <td>(신 설)</td> <td>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 당해 연도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계정대체 (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반납) (※ '25년도 변경사항)</td> </tr> </tbody> </table>	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 중 일부를 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신 설)	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 당해 연도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계정대체 (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반납) (※ '25년도 변경사항)	<p>p.279</p> <table border="1"> <tbody> <tr> <td>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 중 일부를 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td> <td>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 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td> </tr> <tr> <td>(신 설)</td> <td>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 당해 연도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차년도 3월 31일까지 이체·계정대체 (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반납) (※ '25년도 변경사항)</td> </tr> </tbody> </table>	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 중 일부를 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 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신 설)	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 당해 연도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차년도 3월 31일까지 이체·계정대체 (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반납) (※ '25년도 변경사항)	<p>고시 제91조의2 개정 사항 반영</p>				
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 중 일부를 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신 설)	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 당해 연도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계정대체 (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반납) (※ '25년도 변경사항)													
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 중 일부를 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 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신 설)	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 당해 연도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차년도 3월 31일까지 이체·계정대체 (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반납) (※ '25년도 변경사항)													

p.271

※ 자세한 사항은 별편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참고

p.471

연구개발기관 변경 동의서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본 연구개발기관은 상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변경사항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와 협력하고, 동 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연구책임자 : (인)

※ 동 서식은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의 사전 동의를 위한 것임

p.277

※ 자세한 사항은 별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참고
<일부 삭제>

p.481~482

연구개발기관 변경 동의서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단 계	1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n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본 연구개발기관은 상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변경 사항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와 협력하고, 동 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전(양도기관)	변경 후(양수기관)
연구개발기관명		

제목 수정

연구개발기관 변경 동의서에 ‘별첨’으로 연구기관 변경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하게 하여 변경 전·후 기관의 권리·의무 이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

양도기관과 양수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관련 법령 및 협약에 의거하여 양도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기관에게 포괄 양도하고 양수기관은 양도기관으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수합니다. 이때,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5호에 따른 유형·무형 연구개발성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이자 중 사용 잔액,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등을 포함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연구책임자 : (인)

별첨 : 양도·양수계약서와 관련 자료

※ 동 서식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의 사전 동의와 양도·양수계약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것임

별첨(양도·양수계약서와 관련 자료)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양도·양수계약서 관련 자료의 작성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양도·양수계약서 대상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일체의 정보
 - 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양도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을 전문기관에 요청한 내용(공문 등)
 - 다. 연구개발비 정산 시점(양도·양수계약서에 명시한 양도·양수 기준 날짜)

	<p style="text-align: center;">별첨(양도·양수계약서와 관련 자료)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p> <p>라. 양도기관이 양수기관에게 이관해야 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잔액 (이 경우, 양도기관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가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날짜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양수기관과 협의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제7항에 따른 회수금은 양도기관이 부담하고 국고 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수기관이 부담하는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음)</p> <p>마. 양수기관은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후 양도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환수금·제재부가금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기관이 부담한다 등으로 별도로 정하는 사항</p> <p>바. 양도기관은 양수기관에게 이관해야 할「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5호에 따른 유형·무형 연구개발성과의 목록</p> <p>사. 그 밖에 양도기관과 양수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 경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하는 포괄 양도·양수계약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p> <p>2. 별첨(양도·양수계약서 및 그 관련 자료)에 대해 필요한 경우 양도기관과 양수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공증' 받은 후 전문기관에 사본 제출 가능</p>	
<p>p.474</p> <p>< 이해충돌(상충) 방지 및 청렴·윤리 실천서약서 ></p> <p>1. 본인은 최근 3년 이내 금전적인 이익 취득 또는 향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p> <p>2. 본인은 해당 과제에 공동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p> <p>3. <u>본인은 피평가자(또는 평가기관)와 최근 3년 이내 공동연구, 사업 관계 경험이 없습니다.</u> <input type="checkbox"/></p> <p>4. (이하 생략)</p>	<p>p.485</p> <p>< 이해충돌(상충) 방지 및 청렴·윤리 실천서약서 ></p> <p>1. 본인은 최근 3년 이내 금전적인 이익 취득 또는 향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p> <p>2. 본인은 해당 과제에 공동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p> <p>3. <u>본인은 피평가자(또는 그 소속기관)와 최근 3년 이내 공동연구나 사업 관계 등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과제의 평가에 참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u> <input type="checkbox"/></p> <p>4. (이하 생략)</p>	<p>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사항 반영(전문기관 개정 수요)</p>